

## 옥외광고물등 표시[ ]허가·신고 [ ]변경 [ ]연장신청(신고) 및 안전점검 신청서

※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✓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(변경)허가10일, (변경)신고 5일, 심의대상 (변경)허가·신고 20일	
광고주 (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)	성 명	생년월일	
	업소명	사업자등록번호	
	주 소	전화번호	
옥외광고 사업자	상 호	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	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	
	주 소	전화번호	
광고물등의 종류	수량	규격	사용자재
표시 위치 또는 장소			가격(예정가격)
표시기간		광고내용	
착공예정일		준공예정일	
게시시설 시공업소명	대표자	등록번호	전화번호
광고물등 관리자 (인)	주 소		전화번호

**안전점검 신청 여부 (처리기간 7일)**      안전점검 신청 [    ], 미신청 [    ]

그 밖의 사항

※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·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·허가 여부를 적습니다.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·제2항, 제9조제2항·제5항, 제10조,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(신고)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주소

신청(신고)인 성명  
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 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**

귀하

건물약도

(큰 도로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그려주십시오)

건물 및 광고물부착사진

## 옥외광고물 등 설치·사용 승낙서

### 광고주 및 광고물 설치내역

광고주 (옥외광고업자)	성명	
	주소	
광고물	표시위치 또는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(    층)	
	표시내용	광고물 종류
	광고물 규격	수량

상기 광고물에 대하여 본인의 건물(토지)에 설치함을 승낙합니다.

### 광고물 설치 승낙자

승낙자 (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)	성명
	주소
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
#### ※ 유의사항

-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광고물등 설치자, 관리자, 광고주 또는 광고물등을 승낙한 토지/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시정명령,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.
- 건물(대지) 사용승낙서에는 반드시 건물 전체 소유주의 도장을 받으셔야 하며, 집합건물로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(승낙서 날인)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정당한 권한 있는 관리인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승낙자

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

## 광고물(돌출간판 등) 점용 허가 신청서

1. 점 용 장 소 : 서울특별시 중구

2. 점 용 면 적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m<sup>2</sup>

3. 점 용 기 간 : 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일 부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일 까지

4. 점 용 목 적 : 돌출간판 등 (    )

위와 같이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 
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일

주 소 : 서울특별시

신청인 :   (인)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

수수료 1000원